

## 〈불임2〉 유니버설디자인 심의 대상 사업 점검표

- ① 항목별 점검내용에 대한 반영여부를 체크하고 해당도서번호 기입
- ② 미반영의 경우 사유 명기

\* 참고사항 :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 → UD컨설팅 사업안내 → UD적용지침 및 UD참고자료

### 점검표

연번	항목	점검내용	해당 도서 번호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반영	부분 반영	미반영	해당 없음	
1	교통 및 보행구간	(도시의 개방성과 안심공간) 주변지역과 시각적으로 개방적으로 연속되며, 안심하는 공간의 느낌을 제공하고 있는가						
		(연속성 확보) 누구나 안전하고 연속된 보행이 가능한가						
		(유효폭 확보) 누구나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교행에 충분한 유효폭 확보를 하였는가						
		(단차, 바닥재질)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단차 없이 평坦하게 마감하였는가						
		(보도와 골목 결절부 등 상충구역) 보행자 우선의 원칙하에 자연스럽고 끊김없이 안전한 이동이 가능한가						
		(경계의 연속성) 보도와 연접한 경계는 연속되고 단차 없이 설치하였는가						
		(보행유도 인지성) 보행 공간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및 주변과 조화가 이루어졌는가						
		(계단과 경사로, E/S, E/V 등 수직이동 연결) 단차가 존재할 경우에는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 가능한 경사로 설치 및 계단을 함께 설치하여 선택적 이용 외, 수직이동 구간 전체가 하나의 통합디자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가						
		(보행 휴게공간) 보행 휴게공간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배치 및 형태로 누구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한가						
		(시설물 구역 조성) 보행에 장애가 되는 가로시설물 등을 적절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구역을 조성하였는가						
		(보행안전 고려 가로수 식재) 보도의 녹지대 또는 가로수는 보행안전공간을 우선 확보한 후 설치하였는가						
		(보차흔용도로) 보차흔용도로 등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구역 표시를 하였는가						
		(자전거도로 구분) 자전거도로는 보행안전구역과 명확히 구분하였는가						
		(자전거도로 교행구간 안전) 자전거도로와 보도의 교행구간이 없도록 계획하고, 교행구간 발생 시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였는가						
		(교통시설물 등의 설치 위치) 교통수단(버스 등) 정류소, 도시철도 출입구, 환승구, 승강기 등은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역에 설치하였는가						
		(정류소, 승강장 이용 편리) 교통수단(버스 등) 정류소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였는가						

연번	항목	점검내용	해당 도서 번호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반영	부분 반영	미반영	해당 없음	
2	진입부	(횡단보도 대기공간) 횡단보도 대기공간과 차도로 이어지는 구간은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 가능한가						
		(횡단보도 안전시설) 횡단보도에 안전한 횡단 및 횡단대기를 위한 경고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였는가						
		(지역 또는 구역 접근성) 대중교통과 연결되기 쉬운 방향으로 진입이 이루어지는가 진입부가 지역의 차별성과 상징성을 감각적으로 전달하고 있는가						
		(디자인 구성) 진입부의 디자인 형태 및 색채, 재료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디자인으로 구성하였는가						
		(출입구 접근성) 누구나 접근 가능한 유효폭, 기울기, 재질 등을 적용하여 설치하였는가						
		(출입구 인지성) 보행자가 쉽게 출입구, 용도 등을 알 수 있도록 계획하였는가						
		(단차, 활동공간) 보행 접근로에서 무단차 수평접근이 가능하고, 출입구 전·후면에 충분한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출입문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는가						
		(수직이동) 높이 차이가 있을 시 기준에 적합한 계단과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의 수직이동시설을 설치하였는가						
		(진입통제)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진입을 억제하거나 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였는가						
		(차량 진출입구) 차량진출입구 전·후에는 재질·색상 등을 달리 하여 주의·경고 표시하며, 보도는 단절 없이 연속되게 보행안전공간을 확보하였는가						
3	내부공간	(디자인 구성) 진입부의 디자인 형태 및 색채, 재료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디자인으로 구성하였는가						
		(실내출입문) 누구나 쉽게 인지 및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유효폭과 형태로 설치하였는가						
		(로비/홀 등의 공간구성)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며, 주요 수직이동 시설과 편의시설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는가						
		(수평이동) 이동과 회전에 어려움이 없는 충분한 통로폭을 확보하고, 보행의 안전성과 연속성 확보하였는가						
		(수직이동) 수직 이동빈도가 높은 곳에는 법적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계단과 승강기, 경사로, 에스컬레이터를 함께 설치하여 사용자가 선택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는가						
4	편의시설	(화장실) 일반인 포함 시각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및 유아 등반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이용가능하도록 설치하였는가						
		(모두를 위한 화장실) 주요 구간에 남녀 구분된 장애인용 화장실을 각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모두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별도로 1개소 이상 설치하였는가(권장)						
		(화장실 내 육아편의시설)						

연번	항목	점검내용	해당 도서 번호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
				반영	부분 반영	미반영	해당 없음	
		남녀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및 영유아 거치대를 각 1개소 이상 설치하였는가						
		(휴게시설) 휴게시설은 누구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간을 확보하였는가						
		(육아편의공간) 수유실 등의 육아편의 공간은 누구나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하였는가						
		(메포조, 안내테스크, 판매기, 빨매기, 음수대, 간이 세면시설 등) 누구나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하였는가						
		(안내전 배려시설) 맹인 안내전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계획 및 설치하였는가						
5	기타 (안전 및 안내사인 등)	(안전한 보도) 보도는 야간에도 안심하고 이용 가능하도록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시설에 대한 인지성을 확보하였는가						
		(위험 주의, 경고 안내시설) 위험발생구역 등에 실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한 안내시설을 설치하였는가						
		(피난, 대피시설) 누구나 위급 상황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거나 구조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였는가						
		(범죄예방시설) 범죄에 취약한 계층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감시 및 경보시설 설치하였는가						
		(종합안내) 누구나 이해 및 이용하기 편리한 종합안내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안내사인을 설치하였는가						
		(방향안내) 누구나 이해 및 이용하기 편리한 방향안내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안내사인을 설치하였는가						
		(시각장애인 안내) 시각장애인의 시설 안내 및 보행유도를 위한 점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실내외 음성유도 시설 등을 설치하였는가						
		(주차장입구 안내) 운전자가 외부 차도에서 시설의 주차장 입구를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주의·경고 안내를 하였는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쉽게 인지·이해 가능한 연속되는 방향 및 위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였는가						
		(우회동선안내) 기울기가 급하거나, 계단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회동선 안내시설을 설치하였는가						
		(빛의 조도 및 색온도) 보행 및 공간이용 등 기능과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조도 및 색온도를 적절히 계획하고 있는가						
		(빛 연출) 수목 투사 또는 건축물 벽면 투사 등 감성을 유도하고 야간 안전을 도모하는 빛 연출을 제공하고 있는가						
		(시각인지 확보) 시각인지를 위한 적절한 색상, 채도, 명도, 질감 차이를 적용하였는가						